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년 8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명칭 변경(안 제2조)

나. 제명 띄어쓰기 등

다. 관련근거 법령의 정비 등

3. 조례 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생략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5. 관련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 제34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35조

6. 참고사항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예산관련 : 해당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32조의 2”를 “제34조”로 하며, “제15조 2”를 “제35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회의수당이라”를 ““의정활동비”라”로 하고, “영 제15조”를 “영 제33조의” 로 하며,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호 및 제2호의 “시도의원”을 “도의원”으로 하고,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의회의장”을 “성주군의회의장”으로 하며, “군수”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라 한다.

제11조 중 “군수 소속공무원의 위원”을 “성주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군소속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생략) ② (생략)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다. ② (생략)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의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성주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